

2025 UINL(국제공증인연합회) 정기총회 참관기(參觀記)

박종순

대한공증인협회 협회장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미 공증담당변호사

I. 머리말

이 글은 필자(筆者)가 2025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독일의 수도 베를린(Berlin)에서 열린 국제공증인연합회(International Union of Notaries, 국제공증인협회라고도 한다. 약칭은 UINL이다. 이하에서는 UINL이라고 한다.)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보고 들은 내용을 간략하게 적은 글이다.

이번 정기총회는 2023~2025 회기의 세 번째 정기총회이자 여섯 번째 대의원회(General Meeting Of Member Notariats, 3rd ordinary session of the 2023~2025 legislature. General Council, 6th ordinary session of the 2023~2025 legislature)로서, 베를린에 있는 인터콘티넨탈 호텔(Hotel Intercontinental Berlin)에서 개최되었다.

참관기를 쓰기에 앞서 먼저 UINL에 대하여 간단히 본다. 현재 전 세계의 공증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문서의 인증과 선서진술서의 작성만을 공증인의 직무로 하고 있는 앵글로색슨계(Anglo-Saxons계, 영미법계)의 공증인과 앞의 직무와 함께 공정증서의 작성도 공증인의 직무로 하고 있는 라틴계(Latin계, 대륙법계)의 공증인이다. 일반적으로 앵글로색슨계는 공증인의 자격 취득이 비교적 쉽고, 법조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라틴계는 원칙적으로 법조 자격을 필요로 한다.

UINL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멕시코 등 라틴계의 공증인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의 공증인회가 결성한 단체이다. 1948년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19개 국가들의 공증인회가 모여 UINL을 발족한 뒤 오늘에 이르고 있고, 현재 93개 국가의 공증인회가 회원이다.

그동안 UINL에서는 공증인의 직무와 분쟁 예방 기능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하여 왔고, 또 공증인 간의 국제 교류를 통해 공증 제도의 합리화·선진화를 도모함은 물론 국제적·통일적 기준을 확립하는 데 힘써왔다. 최근에는 공증인의 직무 권한의 확대와 전자 공증제도의 강화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한편 UINL 중 ‘L’은 ‘LATIN’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처음에는 ‘라틴계 국제공증인연합회(Union Internationale du Notariat Latin)’가 정식명칭이었다. 그런데 2005년에 개최된 총회에서 ‘Latin’을 삭제한 것을 정식명칭으로 부르기로 결의하여 지금은 국제공증인연합회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UINL의 약칭은 ‘L’을 삭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증인법은 라틴계의 공증 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는 2010년에 UINL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고, 대륙별 위원회인 아시아지역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 리오넬 갈리에즈(Lionel Galliez) UINL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II. 총회 참관기

1. UINL 회장(UINL President) 선출

정기총회 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총회 둘째 날인 2025년 10월 1일 ‘2026~2028 회기’의 신임 UINL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2명이 후보로 나섰다. 아프리카 베냉 공화국(Republic of Benin)의 마모두 올라그니카 살람(Mamoudou Olagnika Salam)과 멕시코의 다비드 피게로아 마르케스(David Figueroa Márquez)이다. 선거 절차에 따라 2명의 후보는 각각 총회 현장에서 영상과 함께 공약사항에 관한 연설을 하였다. 후보들이 연설하는 동안 총회 회원들의 열기는 한껏 달아올랐다. 연설 후 총회에 참석한 70여 개국의 대표단이 투표를 한 결과 멕시코의 다비드 후보가 신임 UINL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물론 필자도 회원으로서 투표하였다. 그런데 UINL의 투표 방식은 약간 독특하였다. 총회 단상에서 선거를 주재하고 있는 UINL 선거관리위원회(Electoral Commission)의 위원장이 프랑스어의 알파벳 순서대로 각 국가의 공증인회 대표를 부르면, 그 대표 1명만이 단상으로 올라가 투표용지를 받고 강연대에서 기표한 뒤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방식이었다.

회장으로 당선된 다비드는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88년부터 공증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멕시코공증인협회장, UINL 아메리카지역위원회 위원장, UINL 이사 등을 역임한 바가 있다. 다비드는 총회에서의 현장 연설과 서신(書信)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요 공약을 내세웠다.

“UINL은 생동감이 있고, 결속력이 있으며, 유용한 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각 회원을 방문하여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원하며, 회원의 국가와 협의하여 공증인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뒷받침하겠다. 또 공증인의 활동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국제적으로 공증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공증인의 위상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공증인 오픈, 법원 폐쇄’라는 구호로 공증을 통해 소송을 줄이고 시민에게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겠다. 또한 공증인의 자연스러운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서 공증에서의 중재를 촉진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증인들이 중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력을 갖추도록 교육 및 개발 활동을 장려하겠다. 결국 분쟁 해결 분야에서 공증인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이 다른 어떤 수단보다도 먼저 사법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나

아가 UINL이 회원 국가와 공증인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국제기구 등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협력을 촉진하겠다.”

다비드 후보가 당선되자 각국의 대표단들이 축하 인사를 하였다. 필자와 오재창 부협회장도 대한공증인협회를 대표하여 다비드에게 축하 인사를 하였다.

2. UINL 부회장(UINL Vice-president) 선출

UINL 회장이 선출된 이후 UINL 부회장 선출이 있었다. UINL의 부회장은 아프리카, 북중미, 남아메리카, 아시아, 유럽에서 각 1명씩 5명을 선출한다.

아프리카, 북중미, 유럽에서는 각 1명만이 입후보하여 투표 없이 부회장이 선출되었다. 대한공증인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에서는 2명이 후보로 나섰다. 중국의 조우 유안생(Zhou Yuansheng, 周院生, 현 중국공증협회 회장)과 우즈베키스탄의 딜쇼드 아슈로프(Dilshod Ashurov, 현 우즈베키스탄공증인회 회장)이다. 2명의 후보는 총회 현장에서 영상과 함께 공약사항에 관한 연설을 하였다. 연설 후 총회에 참석한 70여 개국의 대표단이 투표한 결과 중국의 조우 유안생이 UINL 아시아 대륙의 부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물론 필자도 회장 선거와 같이 회원으로서 투표하였다.

조우(Zhou)는 민법과 상법을 전공한 법학박사로서 30여 년 동안 공증 사무에 종사하여 왔다. 특히 그는 중국의 공증인법을 입안하는 데 참여하여 중국의 공증 제도에 대한 확실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또 중국 최초로 지적 재산권에 관한 공증 사무의 플랫폼을 수립하는 데에도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크게 발전시켰다.

조우(Zhou)는 총회에서의 연설과 서신(書信)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요 공약을 내세웠다. “공증의 역할과 세계적 활동의 증진·협력·표준화에 기여함으로써 부회장의 역할을 다하겠다. 첫째, UINL 안에서 아시아의 영향력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임기 동안에 중국에서 공증과 관련한 국제 토론회 및 세미나와 함께 UINL 회원 국가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겠다. 둘째, 아시아에서 공증 역량의 발전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이를 위해 ‘아시아 공증인 훈련소’의 설립을 제의하겠다. 이는 교육, 연수, 실무를 통합하는 종합적인 플랫폼으로서 공증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공증 분야에서 정보 과학기술의 활용을 증진하겠다. 그래서 공증의 정보화, 전자문서에 대한 국경을 넘는 인증, 데이터와 정보의 보안 등과 같은 주요 주제에 대하여 UINL 회원 국가들과 소통을 강화하겠

다. 넷째, “공증 + 조정” 그리고 사법지원에 있어 공증인의 참여에 관한 중국의 실무와 경험을 공유하겠다.”

조우(Zhou)가 당선된 후 필자와 오재창 부협회장은 조우(Zhou)에게 축하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 그다음 날 부회장 후보였던 우즈베키스탄의 딜쇼드 아슈로프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넸다.

3. UINL 대륙별 위원회 위원장(Continental Commission President) 선출

UINL 부회장이 선출된 후 UINL 대륙별 위원회 위원장의 선출이 있었다. UINL에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의 대륙별 위원회가 있다.

대한공증인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 대륙에서는 카자흐스탄(Kazakhstan) 공증인회 회장인 아셀 자나빌로바(Assel Zhanabilova)가 단독으로 나섰기 때문에 투표 없이 아시아 지역위원회(Asian Affairs Commission, CAAs)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아시아지역위원회는 2025년 6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아시아지역위원회 총회에서 아셀 자나빌로바를 위원장 후보로 추대한 바가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아메리카지역위원회에서는 2명의 후보가 나섰기 때문에 투표를 하였다. 유럽지역위원회는 2명의 후보가 나섰으나 그중 1명이 총회에서 사퇴하여 투표 없이 위원장이 선출되었다. 이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은 각각 공약에 관한 연설을 하였다.

참고로 아시아지역위원회의 영어 약자(略字) 표기가 ‘CAAs’인 이유를 소개한다. 아시아지역위원회(Asian Affairs Commission)의 영어를 약자로 표기하면 철자의 순서는 다소 이상하지만, ‘CAA’라고 하여야 할 것 같고, ‘CAAs’라고 해서는 안 될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s’로 시작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약자 표기를 보면 ‘CAAs’이다. 이는 아시아 대륙을 아프리카 및 아메리카 대륙과 구별하기 위해서 아시아의 영어 스펠링 중 ‘s’를 맨 마지막에 붙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프리카지역위원회는 CAAf(African Affairs Commission. Africa 중 f를 맨 마지막에 붙임)로, 아메리카지역위원회는 CAAm(American Affairs Commission. America 중 m을 맨 마지막에 붙임)으로 표기하고 있다. 유럽지역위원회는 CAE(European Affairs Commission)로 표기하고 있다.



▲ 필자가 UINL 회장 등 선거와 관련하여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4. 키르기스스탄(Kyrgyzstan)공증인회의 UINL 가입 신청

키르기스스탄공증인회는 2025년 2월 4일 UINL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UINL 국제공증인협력위원회(CCNI, International Notarial Cooperation Commission)의 보고가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개요

키르기스스탄은 1925년부터 공증인제도를 갖고 있고, 올해가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현행 공증법은 국가 공증인과 자영업 공증인의 공존을 허락하는 혼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2025년 4월 현재 자영업 공증인이 299명, 국가 공증인이 60명이다.

나. 공증인의 정원

대부분의 공증인들은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쉬케크(Bishkek)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

러나 공증 서비스는 전 지역에서 보장되고 있다. 국가 공증인은 주로 자영업 공증인이 없는 곳에 있다. 현재 인구 24,000명에 1명의 자영업 공증인이 있다(키르기스스탄 인구는 2024년 현재 720만 명이다.)

2023년 공증법은 공증인의 수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공증인의 수에 대한 제한은 UINL에 가입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CCNI 위원장은 공증법에 그러한 제한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키르기스스탄공증인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지역당 주민 수에 따라 공증인의 수를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공증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이 건의는 2025년 6월 25일 공증법에 도입되었고, 법무부장관에게 키르기스스탄공증인회와 제휴하여 지역당 주민 수에 따라 공증인의 수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다. 공증인의 직무와 자격 등

자영업 공증인은 직무 수행에 있어 공법을 따라야 한다. 공증인은 진정한 문서를 작성하고, 문서의 서명 등을 인증하며, 번역문의 정확성을 인증하고, 상속의 증명서를 발급하며, 국가에 의한 등록을 위해 문서를 기록하여 남기고, 사적 합의서에 집행 규정을 추가할 권한을 갖는다.

공증인의 독립과 불편부당은 공증법과 윤리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공증인은 부동산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과 같이 정기적인 상업적 행위에 종사할 수 없다. 또 가까운 가족이나 공증인사무소의 직원이 관련되어 있는 문서에 관여할 수 없다. 또 공증인은 직업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되기 위한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키르기스스탄 국적이어야 하고, 25세 이상 75세 이하이어야 한다. 법률에 관한 학사 학위가 있어야 하고, 3년 이상의 전문적인 법률적 실습 경력이 있어야 하며 공증인과 6개월의 실습 훈련을 마쳐야 한다. 또 적성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고, 자영업 공증인의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키르기스스탄공증인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한편 2023년 공증법은 전문적인 법률적 실습 경력에 대하여 최소한 1년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는 매우 짧은 기간으로 보일 수 있었다. 이에 CCNI 위원장은 전문적인 법률적 실습 경력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25일 공증법은 최소한 3년의 전문적인 법률적 실습 경력을 필요로 하

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또 2023년 공증법은 공증인의 최대 실습 훈련 기간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았다. CCNI 위원장은 1년이라는 최소의 실습 훈련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25일 공증법은 6개월의 실습 훈련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3년의 전문적인 법률적 실습 경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고려하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공증인회가 수립한 자영업 공증인의 윤리규정은 공증인이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공증인의 직업적 평판과 관련한 행동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공증인의 활동을 지도하는 원리는 독립, 불편부당, 객관성, 윤리기준의 준수이다. 공증인회는 공증인의 직업적 직무에 대한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공증인이 윤리 규범을 위반하였는지를 조사한다. 또 공증인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공증인의 자격 정지나 취소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다.

라. 공증인회

공증인회는 키르기스스탄에서 모든 자영업 공증인을 소집한다. 회원 가입은 공증법에 의해 공증인의 의무이다. 회는 비영리단체이고 독립적인 단체이며 공증법에 의한 법적 기구이다. 공증인은 회에 회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마. 인증 절차

공증인은 공증인 앞에 출석한 당사자들의 능력과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문서에는 공증인 앞에서 서명된다. 또 문서에는 촉탁인의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서명될 수 있다.

공증인은 촉탁인에 의해 제출된 공증 문서에 대한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공증인은 문서의 내용이 당사자들의 실질적 의도에 따른 것이고, 법에서 규정된 요건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공증인은 법의 요건에 반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거절하여야 한다.

바. 증명력과 집행 가능성

공증법에는 문서의 집행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4년 6월 공증법에서는 중

명력을 규정하지 않았다. 증명력의 규정은 UINL의 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공증인회에게는 필수 조건이다. CCNI 위원장의 조언으로 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공증 문서의 증명력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증법 개정을 건의하였다. 2025년 6월 25일 공증법은, 공증 문서는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증되고, 교부되거나 증명된, 법률적으로 중요한 권리, 의무, 사실이나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개정법은 공증 문서는 정부 기관, 지방 정부, 공적 단체, 공무원, 시민, 법인을 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결론

키르기스스탄공증인회는 UINL의 회원이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 따라서 CCNI는 UINL 회장 등에게 키르기스스탄공증인회의 회원 가입 승인에 찬성 투표를 할 것을 제의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CCNI의 제의에 따라 키르기스스탄공증인회는 UINL의 회원으로 가입되었다. 이에 따라 UINL 회원은 93개국이 되었고, 아시아지역위원회에 참여하는 회원은 10개국이었다(대한민국, 중국, 일본,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레바논, 키르기스스탄).

5. 기타

회의 일정에는 앞에서 언급한 일정 외에 성원 및 의결정족수 확인, 이전에 개최된 총회 의사록의 승인, 전차 회의 이후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보고, UINL 회장의 UINL 현황 및 활동에 관한 연례 보고, 우수 공증실무 지침 발표, UINL의 재정 보고, 대륙별 부회장의 활동 평가, 대륙별 위원회의 활동 평가 등이 있었다.

우수 공증실무 지침 발표에서는 UINL 인권위원회(The Human Right Commission, HRC) 위원장인 알무데나 카스트로 지로나 마르티네즈(Almudena Castro-Girona Martinez)가 백서인 ‘국경을 넘는 부모 지원의 법적 확실성 보장을 위한 우수 공증 실무 지침(White Paper - Guide to Good Notarial Practices to Ensure Legal Certainty in Cross-Border Parental Support)’을 발표하였다.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년 전 UINL 인권위원회는 신체장애인이 있는 국민을 위한 우수 실무 지침을 발간하였다. 이 연구는 신체장애인과 관련한 공증 활동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와 같은 목적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집단인 아동기에 대한 백서를 발표한다. 2014년 두 명의 공증인인 프랑스의 로랑 드즈아와 카메룬의 압둘라이 해리소우는 무국적의 증명서를 가지지 않은 비합법적인 미성년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몇 년 후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세계법 회의에서 코트디부아르와 인도네시아의 공증인협회 대표들은 많은 국가에서 버려지고 신원 불명인 어린이들(약 2억 명으로 추정)에 대한 놀라운 상황을 발표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법률 전문가들의 주의를 끌었다. 이러한 어린이들은 건강이나 교육 등 기본적인 공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 결국 어린이들은 인신매매나 학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어린이들이 그들의 권리를 잘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관련된 법률적 문서가 있을 때마다 공증인의 기본적 책무는 시민권과 국적과 같은 그들의 권리에 대한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공적 관리로서 공증인들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공증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무관심하게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이 지침을 마련하게 된 동기이다. 그동안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출생과 신분에 관한 공문서를 교부함으로써 어린이를 합법화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UINL 회원으로부터-때때로 유니세프와 같은 초국가적인 국제기구와 공동으로-기부금을 받았다. 여기에서 어린이를 합법화하기 위한 업무란 코트디부아르에서 실행된 것(이미 100만 명의 수혜자를 갖게 됨)과 같은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나 입법적 개혁을 말한다.

이 백서에서는 알제리,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등과 같은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시작된 이 캠페인을 홍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증언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모든 소년과 소녀에게 출생 증명에 관한 공증 문서를 교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문서는 미성년자들이 그들 자신의 신분을 갖는 것을 보장하는 필수적 문서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미성년자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이 백서는 새로운 사회적 현실, 즉 미성년자와 그들의 부모의 국제적 이동에 관하여 진지하게 이야기한다. 공증인들은 부모와 헤어진 어린이들과 관련하여 외국으로부터 문서의 이동에 점점 더 직면한다. 그런데 이것은 서로 다른 법률적 체제에 의해 규제되는 복잡한 상황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이 백서에서 여행 목적지의 국가에 따라 국제적 이동(여행 허가, 아포스티유, 합법화, 동의, 특별한 위임장, 부모의 권한을 실행하는 것을 확대하거나 지원하는 공정증서 등)과 그 필수요건을 확실하게 하는 데 필요한 많은 문서들을 수집하려고 노력하였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공증의 법률적 확실성은 법률적 관계에서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보증하는 기본적인 것이다.

1989년 11월 유엔이 채택한 어린이의 권리에 대한 협약은 본질적으로 고려된 네 가지의

개념을 언급한다. ① 어린이에 대한 최고의 이익, ② 부모의 책임, ③ 불가결한 시민권과 국적에 대한 권리와 함께 어린이 권리의 목록, ④ 보호제도 그 자체.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이 지침은 공증 문서를 위한 기초나 필수적 요건을 마련한다. 이는 국경을 넘는 부모의 지원과 미성년자의 이동에 있어 법률적 확실성을 보증하기 위해서이다. 나아가 신원에 대한 권리가 어린이의 기초적 권리인데 아프리카 대륙에서 공증 인과의 협력으로 미성년자의 신원확인 관련 성공적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이 경험들은, 다른 국가가 이러한 기초적인 권리가 21세기에는 침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륙별 위원회의 활동 평가에서는 아시아지역위원회 위원장인 몽골의 차드라발 바얀자갈(Chadraabal Bayanjargal)이 발표하였다.

총회 마지막 날, 필자는 지난 3년간 UINL을 멋지게 이끈 UINL 회장 리오넬 갈리에즈와 이번 정기총회를 주최한 독일연방공증인회 회장 마르쿠스 시코라(Markus Sikora)에게 감사의 뜻으로 대한공증인협회가 마련한 작은 선물을 주었다.

나아가 필자와 오재창 부협회장은 총회 기간 중 일본 대표단인 히로카미 카즈히로(廣上克洋), 타카기 준코(高木順子), 우카와 하루히코(宇川春彦) 등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히로카미 카즈히로와 우카와 하루히코는 검찰 출신이라고 한다. 타카기 준코는 여성 공증인이다. 또한 중국 대표단인 조우 유안생(Zhou Yuansheng, 周院生, 차기 UINL 부회장), 첸 창(Zheng Zhang, 張 鐸)과 현 UINL 부회장인 덩 지아밍(Deng Jiaming)과도 즐겁게 인사를 나누었다. 물론 총회 기간 중에 몽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베트남의 대표단들과도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다.

III. 맺음말

맺음말에서는 이번 총회에서 느낀 소감을 몇 가지 적어 본다. 첫째, 이틀간의 총회 일정이 매우 빠빡했다. 일정 중 첫날에는 대부분 지난 1년간 UINL의 활동에 대하여 발표하는 것이었으므로 잠시도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 둘째 날에는 차기 임원 선거가 중요한 일정이었는데 이때에는 연설을 하는 후보나 투표를 하는 대표단들이 모두 진지한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다소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둘째, 아시아를 넘어서서 유럽, 아프리카, 미주

(美洲)의 공증인들이 현재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조정과 중재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한 공증을 말하고 있었다. 또 공증인의 공적 역할, 즉 공적 기관으로서 국민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았다. 셋째, 라틴계 공증제도와 앵글로색슨계 공증제도의 융합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각각의 연혁에 비추어 보면, 라틴계와 앵글로색슨계가 융합될지는 다소 의문이지만 현 UINL 회장은 라틴계와 앵글로색슨계의 융합이나 상호교류에 적극적인 입장인 것 같다. 법제도의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 번쯤 음미해 볼 만한 것 같다. 넷째, 더 좋은 공증인법을 만들기 위해 라틴계 국가들의 공증인법을 공유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예컨대 키르기스스탄공증인회의 UINL 가입 신청과 관련한 CCNI의 보고서는 키르기스스탄의 공증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라틴계 국가의 공증인법을 모두 영어로 번역하고 이를 회원에게 제공한다면, 비교법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차기 회장 등 임원 선거의 결과를 보니 국제사회에서는 그 국가의 국력이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 국제적 현실인 것 같다. KNA



▲ 필자와 오재창 부협회장은 중국(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왼쪽 첫 번째), 일본(오른쪽 첫 번째), 인도네시아(오른쪽에서 세 번째)의 대표단과 사진을 찍었다.